명지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 규정

(최종개정일 2023.9.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 함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이 학령기 학생과는 별도로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단과대학을 말하며, 우리 대학교의 경우 미래융합대학을 말한다.

- 2. "성인학습자"라 함은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②만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말한다. 3. "성인학습자 정원"이라 함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위과정 학습자 모집을 위하여 학령기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한 정원을 말하며, 우리 대학교의 대상학과는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와 성인학습자 정원을 전환한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법과대학 법무정책학과를 말한다.
- 4. "전담교직원"이라 함은 성인학습자 대상학과를 포함한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전담조직에 소속된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 조직 및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평생교육전략위원회 조직 및 운영(장명 변경 2023.9.1.)

- 제4조(평생교육전략위원회 조직 및 기능 등)(조명 변경 2023.9.1.) ①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평생교육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하다)를 둔다.(변경 2023.9.1.)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처장, 입학 처장, 사무지원처장, 미래융합대학장, 방목기초교육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사업추진 계획 수립, 조정 및 심의
 - 2.사업계획 자체평가
 - 3.사업비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사업비 세부집행지침 제정

- 5.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6.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제5조(사업실무위원회)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의 효율적 실행 및 점검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6조(사업지원부서) 위원회의 행정 운영 및 사업비 중앙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업추진팀을 둔다.(변경 2023.9.1.)

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제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위탁기관 사업관리운영 매뉴얼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시행하다.
 - ②국고지원금은 교비회계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입·출금과 이자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 ③사업비 집행기간은 위탁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 후 집행한다.(변경 2023.9.1.)
 - ⑤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자체평가

-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자체평가위원회는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자체평가위원회는 위탁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 2.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 3.기타 사업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
- 제9조(산업체 자문위원회) ①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교육과정 자문 및 지역네트워크 홍보를 위하여 산업체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산업체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협약을 맺은 특성화고, 기업체, 지자체, 동문회 임원, 졸업생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산업체 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미래융합대학 발전계획 자문
 - 2.성인학습자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자문
 - 3.교육만족도 자문

4.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5.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장 보 칙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23.9.1.)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집행한 업무와 사업비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
-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명지대학교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